##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 안 번 호 1134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 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 어획실적 및 전재(轉載)실적의 보고(안 제9조)

-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출항한 당일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에는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 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 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

조)

- 1)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 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함.

####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 ·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 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 바. 어획증명서의 발급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전재실적·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안번호 제1135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7호) 및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 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 다.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 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 마.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 "어업활동"이란 연근해어업이나 연근해어업과 관련된 탐색・집어 (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어선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 3. "불법어업"이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외국어선(대한 민국의 관할 수역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어선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이나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 또는 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 4. "비보고어업"이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외국어선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 5. "비규제어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말한다.
- 6.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 나. 「수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 박(이하 "어획물운반선"이라 한다)
- 7. "수산물"이란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8. "어획증명서"란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 9. "전재"(轉載)란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10. "양륙"(揚陸)이란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이하 "불법어업등"이라 한다)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 3. 불법어업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 4.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 6.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 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시행계획"이

- 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전 연도 시·도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도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진하 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보고 및 이행 사항 등

-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행(航行)하거나 조업(操業)을 할 때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작동시켜 어선의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근해어업자"라 하다)
  - 2.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이하 "어획물운반업자"라 한다)
- 제9조(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어선명, 어선번호 및 조업업종
  - 2. 어선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3. 조업시간, 조업해구[연근해어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확인할 수 있

- 는 조업구역으로서 위도·경도 또는 소해구(小海溝)로 표시되는 구역을 말한다],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 4. 예정 양륙항 및 예정 입항 일시
- 5. 어획물운반선의 명칭 및 번호, 어획물운반선 소유자의 성명,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전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연근해어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한 당일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에는 해당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에 포함하여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④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어획물운반선의 명칭 및 번호
- 2. 어획물운반선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3. 예정 양륙항 및 예정 입항 일시
- 4. 전재하는 어선명 및 어선번호, 어선 소유자의 성명,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실적과 전재실 적의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 제10조(양륙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港) 또는 항포구 중에서 수산물의 양륙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1.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
  - 3.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포구
  - ②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 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륙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 연근해어업자는 제10조제3 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양륙검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 장치의 작동, 제9조에 따른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이행 여부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 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 선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양륙검색"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수산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검사
- 2. 연근해어업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 ② 어업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양륙검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양륙검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연근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 반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연근해어업자 또는 어획물 운반업자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1. 양륙 또는 전재의 일시 중지
- 2. 어업감독 공무원이 지정하는 양륙검색 장소로의 이동
- ④ 어업감독 공무원은 양륙검색을 실시한 결과 이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어업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근해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어획물의 양륙 금지 및 해당 어선의 일시적 출 항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어업감독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양륙검색의 결과 및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륙실적의 보고) 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양륙장소 및 입항일시
- 2. 어종별 총어획량(어획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양륙실적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연근해어업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포함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제9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륙실적 등의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어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양륙실적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이하 "어획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연근해어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이행 여부
  - 2.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이행 여부
  - 3.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과 실제 양륙량의 동일성 여부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어획확인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5조(어획확인서의 전달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물유통사업자
  -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
  -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 ② 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 다른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해당 수산물을 양도할 때에도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획확인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어획증명서의 발급) ①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상대국으로 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신청 방법·절차 및 발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7조(외국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제출 등) ① 수산자원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산물 수입업자"라 한다)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려는 외국 수산물이 해당 원산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해당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수산물은 불법어업등으로 획득한 수산물로 본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1. 수산물 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 수입하려는 수산물이 어획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3.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선박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수산기구, 유럽연합 또는 외국정부에서 관리하는 불법어업등의 선박 목록에 포함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수입 수산물 원산지 국가의 어획증명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 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연근해어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및 어선의 현황
  - 2.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현황
  - 3. 제9조에 따른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현황
  - 4.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 5. 제14조에 따른 어획확인서의 발급 현황
  - 6. 제16조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발급 현황
  - 7. 그 밖에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근해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명예어업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와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를 명예어업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교육 및 홍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등의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포상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어 업등의 예방에 필요한 지도·단속, 불법 양륙 및 어획확인서의 불법 유통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감독 공무 원으로 하여금 양륙장소·사업장·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의 교육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과 전재실 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	안제7조(자방차단체의 지원 등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		
0	안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2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3	안제19조(명예어업감시원)	연근해어업자와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를 명예어		
		업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를 지급		
	안제21조(포상금 지급)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1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4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5	안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어업인의 교육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위임·위탁)	또는 단체에 위탁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제7조제1항(지방자치단 체의 지원 등)	제3호: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항	
2	안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사항	
3	안제19조(명예어업감시원)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4	안제21조(포상금 지급)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사항	
5	안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제3호: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위임·위탁)	추계가 어려운 사항	

#### 2. 상세 사유

#### ○ 안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불법어업의 예방 및 관리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따른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 어려움

#### ○ 안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현재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관련 시스템 구축 중(스마트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2~24, 27억원)

#### ○ 안제19조(명예어업감시원)

- 명예어업감시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는 연간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산출근거) 월 30만원 × 12개월 × 100명 ≒ 4억원
- 안제21조(포상금 지급)
- 현재 불법어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제도 운영 중( '23년 1억원)
- 안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연근해어업인 대상 불법어업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언적 사항으로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 어려움

## Ⅲ. 부대의견

○ 해당 사항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박혜진	권회근	임태훈	최현호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권회근	044-200-5511	beatitud0@korea.kr